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갖춰진 국제회의 인프라 활용과 올림픽 유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 나. 평창군 주도의 마이스(MICE) 기반을 구축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1)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2) 관련 용어(마이스, 마이스산업, 마이스 전담조직)의 의미를 정함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책무 규정

다.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1)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 2) 마이스산업 기본 방향 및 목표, 국내외 여건 및 전망, 육성 및 추진 전략, 활성화 방안 등

라.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안 제5조)

마이스산업 조사 및 연구, 국내외 홍보, 시설 건립과 운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육성,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

마.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안 제6조)

- 1) 마이스 유치·개최 및 발굴 지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2)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 서류 제출

바.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경비 지원 가능

사.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8조~제12조)

- 1)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 2)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3)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함
- 4) 위원장은 연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5)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아.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자. 시행규칙(안 제14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6조
-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4) 「서울특별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외 39개 자치법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18. ~ 2023.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행정규제범위 미포함 ※ 기획실-898호(2023. 6. 28.)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기획실-898호(2023. 6. 28.)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 ※ 가족복지과-2079호(2023. 7. 6.)
 - 미반영 : 제9조(협의회 구성 등)의 성별 비율 관련
※ 올림픽체육과-1185호(2023. 7. 13.)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문화·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이하 “마이스”라 한다)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말한다.
2. “마이스산업”이란 마이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3. “전담조직”이란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평창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발전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추진 전략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마이스산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조사 및 연구
2.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
3. 마이스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운영 지원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마이스산업 관련 기업 육성
6. 마이스 연계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발전 지원
7. 지역 특화 마이스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8. 유니크 베뉴(전통적인 마이스 개최 시설은 아니지만 평창군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마이스 개최 가능 장소를 말한다)의 발굴 및 육성 지원
9. 마이스 유산(마이스 개최를 통해 단기·장기적으로 창출된 사회·

문화·경제적 가치를 총칭한다) 발굴 및 확산 사업

10.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① 군수는 마이스 유치·개최를 위하여 마이스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이스 유치·개최 및 발굴 지원

2. 그 밖에 마이스 유치·개최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마이스 유치·개최 계획서

2. 마이스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자료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창군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의 설치)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평창군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유치·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올림픽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마이스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나.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다.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신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자치단체 조례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19. 7.18.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2. 1.13.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 8. 5.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 7.28.
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8. 4.23.
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마이스(MICE)산업육성 조례	2020. 3. 1.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 9.30.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12.29.
9	경기도	경기도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12.30.
10	충청북도	충청북도마이스산업육성 지원 조례	2022.12.30.
11	충청남도	충청남도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1. 4.30.
12	전라북도	전라북도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17.11.17.
13	전라남도	전라남도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1. 5.20.
14	경상북도	경상북도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13. 9.16.
15	경상남도	경상남도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18.12. 6.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 3. 4.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3. 1. 6.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0. 7. 9.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3. 3.15.
20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0. 5.18.
21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11.17.
22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18.12.27.
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마이스산업진흥 조례	2021. 5.12.
24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3. 5.23.

25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0. 7.13.
26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0. 3.25.
27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마이스산업진흥 조례 시행규칙	2021. 6.28.
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 7.13.
29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12.30.
3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3. 1.20.
31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3. 3. 2.
3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10.21.
33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8. 5.31.
34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 7. 6.
35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0. 7. 3.
36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 4.29.
3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16. 9. 9.
38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1.11.17.
39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마이스(MICE)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3. 1. 6.
4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22.12.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연락처	(033) 330 - 2018